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310
- 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 외 11명
- 발 의 일 : 2018년 12월 31일
- 회 부 일 : 2019년 1월 7일

2. 제안이유

-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,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상이함.
-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 28조의4제1항에 따라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조제3호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또한,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임용기간 운영의 경우에도 국가직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총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총임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불안정한 행정 집행 초래는 물론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공무원간 고용 차별이 존재하여 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규모를 10%로 제한하고 있고,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,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음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된 ‘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’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국가직과 지방 자치단체직간 상이한 바,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기타사항 : 없 음.

5. 이 송 처

가. 국 회 : 국회의장, 행정안전위원장

나. 정 부 : 국무총리, 행정안전부장관

6. 검토의견

-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가직 개방형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무원의 임용 차별 해소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.

※ 현행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은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,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·임용기간 및 충원방법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직위지정 범위와 임용기간을 규정한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는 지정범위가 총수(특별시 및 광역시·도 : 1급부터 5급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 : 2급부터 5급까지)의 100분의 10범위내이며 (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1)), 임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정 하고 있음(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2)).

- 1) [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] 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·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,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2) [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] 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은 제외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,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- 이에 반해,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직위를 지정(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)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(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)하고 있음.

〈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 지정범위 비교〉

구분	국가직 개방형 직위	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	
		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	시·군 및 자치구
개방형 직위 지정 범위	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	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	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범위</u> - <u>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범위</u> 	<u>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총수의 100분의 10범위</u>	<u>2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총수의 100분의 10범위</u>

〈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,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비교〉

구분	일반임기제 공무원		국가직 개방형 직위	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
	국가직	지방직		
개방형직위 임용 기간	공무원 임용령	지방공무원 임용령	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	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규정
	<u>10년 (5+5년)</u>	<u>10년 (5+5)</u>	<u>(5년+일정기간 동안 연장 가능)</u>	<u>5년으로 제한</u>

※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임용기간 차별 시정을 건의하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」 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음.

- 관련법령(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)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채용목적, 종사업무와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,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임.

〈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 지정과 임용기간 규정〉

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국가직)	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지방자치단체)
<p>제3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「공무원 임용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(이하 "소속 장관"이라 한다)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<u>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</u>,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소속 장관은 <u>중앙행정기관의 실장·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(이하 "과장급직위"라 한다)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</u>,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,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개방형직위의 지정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<u>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·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</u>,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,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)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<u>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<u>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
- 이러한 차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,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
〈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차별 사례 및 시정조치 내역〉

-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진정 결과 2건
 - 대우공무원 선발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정 권고(2014.9.19.)
 - ☞ 특정직 공무원 재직경력 인정 차별 : 국가직 모두 인정, 지방직 3년이상 근무기간만 인정한 사례
 -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시 차별 해소 권고(2016.10.31)

- 또한,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간 근무기간 및 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차별적 규정이 존재하여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을 이미 개정(2018.10.2. 시행)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, 일반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.

※ 「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」(행정1부시장방침 제245호, '18.10.2.)이 시행되고 있음.

- 따라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'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'의 지정규모 및 임용기간을 차별없이 일관성 있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본 개정 건의안은 고용평등과 인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-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과 관련하여,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정규모가 상이(특별시·광역시도·특별자치도 : 1급부터 5급까지, 사군 및 자치구 : 2급부터 5급까지)한 바,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범위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서울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에 있어 4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.

전 문 위 원	김 태 한	입법조사관	김 정 덕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